

의안번호	제 246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7월 일 (제 273 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정윤숙 의원외 7인
발의연월일	2008년 6월 30일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윤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6
----------	-----

발의연월일 : 2008. 6. 30.

발 의 자 : 정윤숙·민경환·이영복
이규완·이대원·박종갑
장주식·권광택(8인)

1. 제안이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의 적용대상을 도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한하여 적용하기로 정함(안 제3조).

나. 여성기업 지원의 제한(안 제4조)

- 1)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여성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 지원 제한 기준의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다.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안 제8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회계과장으로 함.

3)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바.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0조).

아.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관련부서 협의 :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와 협의되었음

라. 규제관련 사항 : 규제신설·폐지는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
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같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입지지원·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같은 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써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통상국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
3. 여성기업인 대표
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
5. 그 밖에 관련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 우대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공동 계약시 참여 우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

4.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

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 우대

②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
2.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10조(여성기업 활동 촉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성기업,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